



##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안내

설천중·고등학교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어 본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1. 학기 중 학생 / 학부모에게 생기부 자료 제공 시 당해학년도의 각 영역 특기사항 및 종합의견에는 제공 되지 않습니다.

2.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 제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.

### 3.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한 내용

-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
- 교과·비교과 관련 교외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
- 교외 기관·단체 등에서 수상한 교외상(표창장, 감사장,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)
- 교외 인증시험 참여사실이나 그 성적
- 모의고사·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
-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
- 도서 출간 사실(도서 제본 가능. 발간이나 출판 안됨)
-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사실
- 어학연수,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
- 부모(친인척 포함)의 사회 경제적 지위(직종명, 직업명, 직장명, 직위명 등) 암시 내용
- 장학생, 장학금 관련 내용
-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, 기관명, 상호명, 강사명 등

### 4. 학적사항

- '특기사항'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(교육청 내부결재일)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합니다.

#### <학교폭력 조치사항별 기재영역, 출결, 삭제 시기>

가해학생 조치사항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7조 제1항	학교생활 기록부영역	삭제시기
제1호(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)	행동특성 및 종합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졸업과 동시(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)</li> <li>• 학업 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</li> </ul>
제2호(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)		
제3호(학교에서의 봉사)		
제7호(학급교체)		
제4호(사회봉사)	출결상황 특기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졸업일로부터 2년 후</li> <li>•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*</li> <li>• 학업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</li> </ul>
제5호(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)		
제6호(출석정지)	학적사항 특기사항	삭제대상 아님
제8호(전학)		
제9호(퇴학처분)		

\* (4,5,6,8호 조치 사항 삭제 시 유의사항)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으나 재학 기간 동안 2건 이상(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7호 포함)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받았거나,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은 심의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음.

## 5. 출결상황

- '결석일수', '지각', '조퇴', '결과'는 질병·미인정·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합니다.
-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입니다.
- 출결 '특기사항'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. '특기사항'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제1항 제6호의 출석 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에 해당되며, '특기사항'란에 사유를 입력합니다.
- '결과'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입니다.
- 같은 날짜에 지각, 조퇴,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합니다.
-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, 지각,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'특기사항'란에 '개근'으로 입력합니다.
- 질병으로 인한 결석 -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 
: 기저질환(천식, 아토피, 알레르기, 호흡기질환, 심혈관질환 등)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,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결석계 제출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. 단, 결석계는 매번 사안 발생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## 6. 수상경력

- 교내상만 입력,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습니다.
-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합니다.

## 7. 자격증 및 인증: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 가능합니다.

## 8. 진로희망 사항

-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진로활동 영역 특기사항 내의 '희망분야'란에 학생의 진로희망(희망분야 또는 희망직업)을 입력하되, 상급학교 전형자료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
## 9. 창의적 체험활동상황

- 자율탐구활동 중 소논문실적(연구주제 및 참여인원, 소요시간)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.
- 1) 창의적 체험활동(봉사활동 제외)의 영역별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
  - ①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
  - ②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
  - ③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
- 2)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어떠한 사유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합니다.
- 3)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주최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.
- 4) 동아리활동: 자율동아리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합니다.(2024학년도 대입부터 대입자료로 미제공)
- 5) 봉사활동: 실적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합니다.  
※ 동아리활동(자율동아리 포함)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## 10. 독서활동상황

- 증빙자료(학생 개인이 보관)를 근거로 책 제목과 저자만 입력합니다.(2024학년도 대입부터 대입자료로 미제공)

## 11.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

-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합니다.

## 12. 자료의 정정

- ①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.
- ② 정정 시,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 가능하며, 학교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합니다.

※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·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,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: <https://star.moe.go.kr>

2021. 7. 19.

설천중고등학교장 직인 생략